

의안번호	2214492
의 퇴 인	박상혁의원
회 답 일	2025.12.9.
추 계 번호	25D6338

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른 신고자 포상금 및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3억 3,650만원씩 총 16억 8,25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336.5	336.5	336.5	336.5	336.5	1,682.5	336.5

주: 본 추계는 금융위원회의 유사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이며,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0조(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)	금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(제6항)	재량규정
2	안 부칙 제11조(다른 법률의 개정)	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(제1항)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40조(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)	○	-
2	안 부칙 제11조(다른 법률의 개정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위법행위 신고자 포상금(안 제140조제6항)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(안 부칙 제11조제1항)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
- 본 추계에서 위법행위 신고자 포상금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(7135-316)을 참고하여 추정하되,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2025년과 2026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각각 320백만원임

[표 2]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: 2022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2	2023	2024	2025	2026
포상금	-	-	200	200	440
비고					전년도 부족분: 120 해당연도 예산: 320

자료: 금융위원회의 제출자료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Ⅱ-1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본 추계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·운영 비용은 민간위원(11명)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며, 그 밖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 - 본 추계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30명으로 하고, 이 중 민간위원은 20명으로 가정함
 - 현행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¹⁾에서 가상자산 위원회는 위원 정수가 15명이며,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위원은 9명임
 - 따라서 제정안에 따라 회의참석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인원은 11명으로 가정
 -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추가 인원은 11명으로 하고, 회의는 연 6회 개최되는 것으로 하며,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「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²⁾을 참고하여 25만원으로 가정함

1) 제4조(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 정부위원회 현황(<https://www.fsc.go.kr/po020401>)에 따르면, 2024년 11월 6일에 최초로 구성된 가상자산위원회는 2024년 4분기 1회, 2025년 1분기 2회, 2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함
 - 본 추계에서 가상자산위원회의 회의실적(반기 3회)을 참고하여,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회의가 연 6회씩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위법행위 신고자 포상금(안 제140조제6항)

- 제정안에 따른 “위법행위 신고자 포상금”은 금융위원회 소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을 참고함. 포상금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다고 가정함
 - 2025년과 2026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각각 320백만원임
- 추계결과, 제정안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,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

[표 3] 신고자 포상금의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신고자 포상금	320	320	320	320	320	1,6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(안 부칙 제11조제1항)

-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은 민간위원 추가분(11명)에 회의횟수와 회의참석수당을 각각 곱하여 추계함

2)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(기획재정부)

-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 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 내로 편성
-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,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

- 본 추계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30명으로 하고, 이 중 민간위원은 20명으로 가정함
 - 제정안은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 폐지³⁾를 전제로 하고 있고, 같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15명 중 민간위원은 9명임
 - 따라서 본 추계에서 제정안에 따라 회의참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민간위원을 11명임
 - 회의참석수당은 1인 1회당 25만원 지급하고, 회의는 연 6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추계결과, 제정안에 따라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회의 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

[표 4] 디지털자산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회의 참석 수당	지급인원(A)	11	11	11	11	11	—
	지급단가(B)	0.25	0.25	0.25	0.25	0.25	—
	회의횟수(C)	6	6	6	6	6	—
	소계(D=A×B×C)	16.5	16.5	16.5	16.5	16.5	82.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결과

- 제정안에 따른 신고자 포상금 및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3억 3,650만원씩 총 16억 8,25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5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신고자 포상금 (안 제140조제6항)	320	320	320	320	320	1,600	—
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(안 부칙 제11조제1항)	16.5	16.5	16.5	16.5	16.5	82.5	—
합계	336.5	336.5	336.5	336.5	336.5	1,682.5	336.5

주: 본 추계는 금융위원회의 유사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이며,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부칙 제5조(폐지법률)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을 폐지한다.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금융위원회의 유사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이며,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na.go.kr